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2008. 2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2008. 2

류 건 식¹⁾ • 김 동 겸²⁾

1) 보험연구원 재무연구팀 팀장

2) 보험연구원 재무연구팀 연구원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 연구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목 차 >

I. 검토배경	1
II. 고령화 진전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변화	2
III.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과 기능	5
1. 국민 경제적 측면	5
2. 사회 보장적 측면	6
3. 소득 대체적 측면	9
IV. 근로자의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 보장	11
1. 근로자의 적정소득대체율	11
2. 근로자의 실질소득대체율	13
3. 노후소득보장차원의 결과평가	17
V.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20
1. 정책적 시사점	20
2. 향후과제	21
<참고문헌>	23
<별첨>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총 소득대체율	24

I. 검토 배경

-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대책 마련이 주요 현안과제로 부각됨.**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단지 13.2%만이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연금제도의 역할은 점점 증대됨.

- 우리나라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제도,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선진국처럼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구축되어 있음.**

다만 인구 고령화, 저출산을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부담 가중, 저조한 개인연금의 세대가입율,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미흡 등으로 연금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적극 해소하면서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퇴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적극 전환되고 있는 OECD 국가의 최근사례와 특징 등을 노후소득보장체계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

- 또한 근로자의 **적정 및 실질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여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이 어느 정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한 후에 **노후소득보장적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함.

II. 고령화 진전과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 OECD주요국과 한국의 고령화속도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은 2000년 이전에 65세 인구의 비중이 이미 7%를 넘어서게 됨.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에 비하면 선진국들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136년 빨리 고령화사회로 진입함.

□ 우리나라도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2026년으로 예견되고 있어 일본에 비해 20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보다 단지 6년 정도 늦은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는 초고속고령화로 향후 20년내에 고령·초고령사회 모두를 맞이하게 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1>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도달년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한국	2000	2018	2026	18	8

주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재구성

□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조기퇴직, 저출산 심화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OECD주요국들은 연금개혁을 추진함.

연금개혁은 대체로 공적연금축소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민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개혁의 직접적인 동기는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악화이며 그 이면에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이라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음.

인구의 고령화와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모두 공적연금 기여자의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의 수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됨.

<표 II-2> 고령화 단계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³⁾

	노령인구 대비부양비	연금/GDP	공적연금 보험료율	가입비율	연금재정 ¹⁾	연금부채 ²⁾
1단계	5.7%	0.6%	8.0%	15.7%	47.1%	5%
2단계	8.5%	3.3%	13.7%	45.4%	34.9%	40%
3단계	18.9%	8.5%	24.6%	89.4%	-19.6%	150%
한국	8.4%	1.1%	9.0%	39.0%	43.9%	25%

주 : 1) 연금재정은 연금기여액에서 연금지출액을 차감한 금액 비율

2) 현재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금제도로부터 보장되는 급여의 현재가치 비율

3) 전세계 90개국 이상의 국가들을 인구고령화의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공적연금 보험료와 연금재정 및 연금부채

자료 : World Bank Report (2000)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도 인구구조상 고령화 단계가 제 2단계로 근접하고 있으나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즉 공적연금의 보험료가 24.6%에 이르는 고령화 3단계에 이르면 연금재정은 이미 상당규모(약 20%)의 적자로 돌아서 제도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 재정상태는 이미 제3단계에 진입함.

- 결국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로 현역 근로세대의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의 순기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제·사회적 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역할을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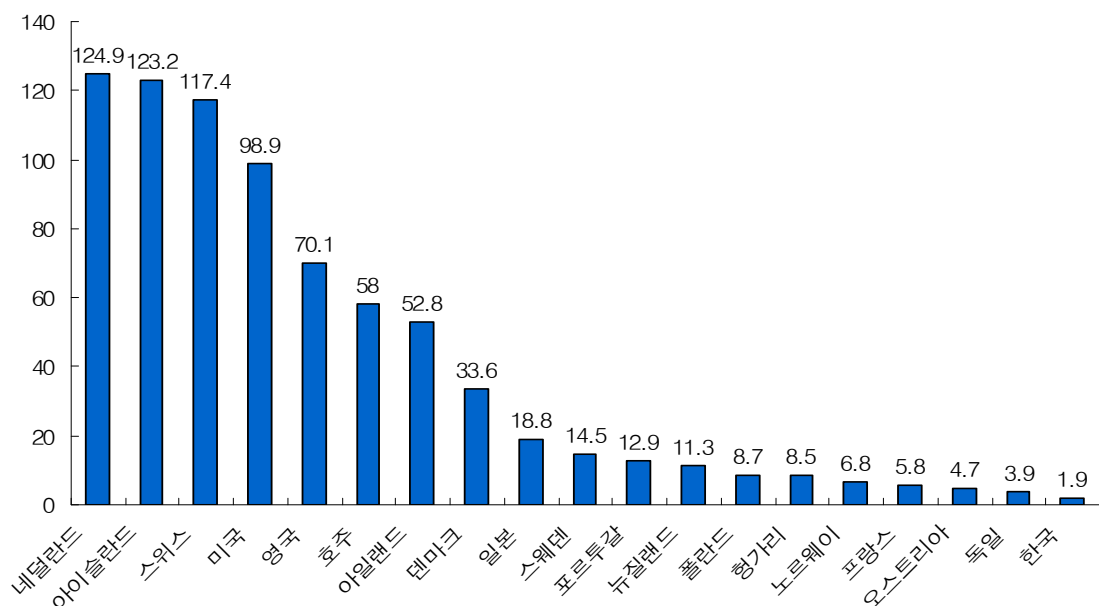
Ⅲ.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과 기능

1. 국민 경제적 측면

□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볼 때 우리나라는 퇴직보험과 합산하더라도 GDP의 1.9%에 불과해 OECD 30개국 중 26위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은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폴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프랑스 등은 GDP 대비 퇴직연금 자산규모가 10%이내로 저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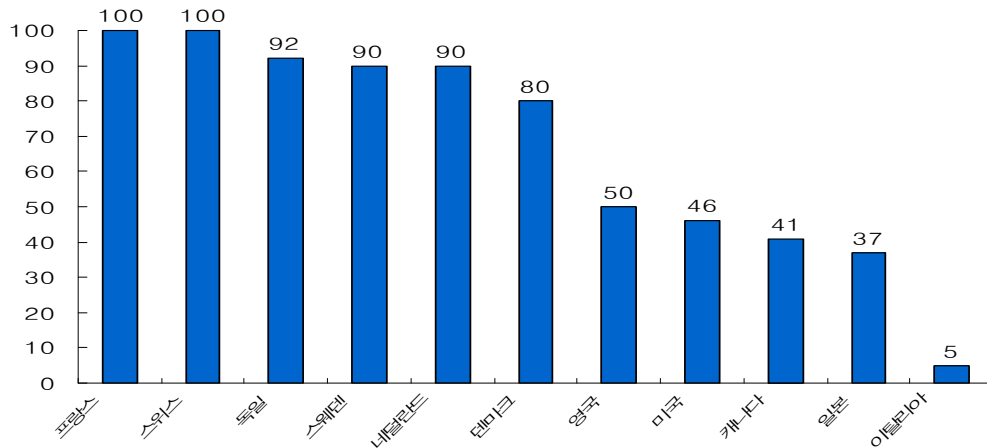
<그림 III-1>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자료 : OECD 및 보건복지부(2006.10.30)

□ 또한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보면 스위스, 프랑스 등은 80~100%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영국, 미국 등은 40~50% 내외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I-2>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가입률 비교



주 : OECD주요국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퇴직연금 사업자 가입률 기준임.

자료 : KDI(2005)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4.58%만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액 역시 전망치*의 2.53 ~ 3.92%에 불과한 실정임.

* 퇴직연금 전망치 : 2010년 퇴직연금 시장 예상 규모로 보험개발원은 67조원, 증권연구원은 69조원으로 추정

- 따라서 퇴직연금제 도입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국민경제적 역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사회 보장적 측면

- 공적연금의 역할이 약한 미국과 같은 시장주의적 시스템(Market based Model)에서는 퇴직연금중심의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반면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의 역할과 비중이 큰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고 있음(Welfare Model).

- 오스트리아, 칠레 등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으로 **완전대체**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북유럽국가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부분대체**함.

<표 III-1>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기능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제도 형태 (DB형/DC형)	퇴직연금 기능
미국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영국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적용제외 또는 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일본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적용제외 또는 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독일	국민연금(소득비례)+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보완
스웨덴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강제)	DB형(DC형 전환)	공적연금 보완
프랑스	국민연금(소득비례)+퇴직연금(강제)	DB형(명목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호주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완전대체
캐나다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보완
네덜란드	국민연금(기초)+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덴마크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핀란드	국민연금(기초)+퇴직연금(강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스위스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강제)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이탈리아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금+퇴직연금(임의)	DC형	공적연금 보완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의 하나인 인센티브제도로써 운용됨.

□ 이처럼 퇴직연금이 임의제도인 나라들에서도 국가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하여 퇴직연금의 공적인 기능을 지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안정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표 III-2> 퇴직연금의 가입형태 국제비교

국가	강제가입	임의가입수준		
		상	중	하
오스트레일리아	1992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덴마크	1964/1985			
핀란드	1956/1985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1998			
아이슬란드			√	
이탈리아				√
일본			√	
룩셈부르크				√
멕시코	1997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2006			
폴란드	1999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2005			
스페인				√
스웨덴	2000			
터어키				√
영국			√	
미국			√	

주 : 2006년 8월 현재기준임

- 또한 OECD국가들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퇴직연금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의 가입을 의무화(일부 또는 완전)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구조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결국,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볼 때 **OECD 주요국(13개국) 중 61.5%**가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거나 공적연금의 일부 등을 적용제외 함으로써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3. 소득 대체적 측면

- **총소득대체율** 기준에 의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수준을 보면 영국,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등의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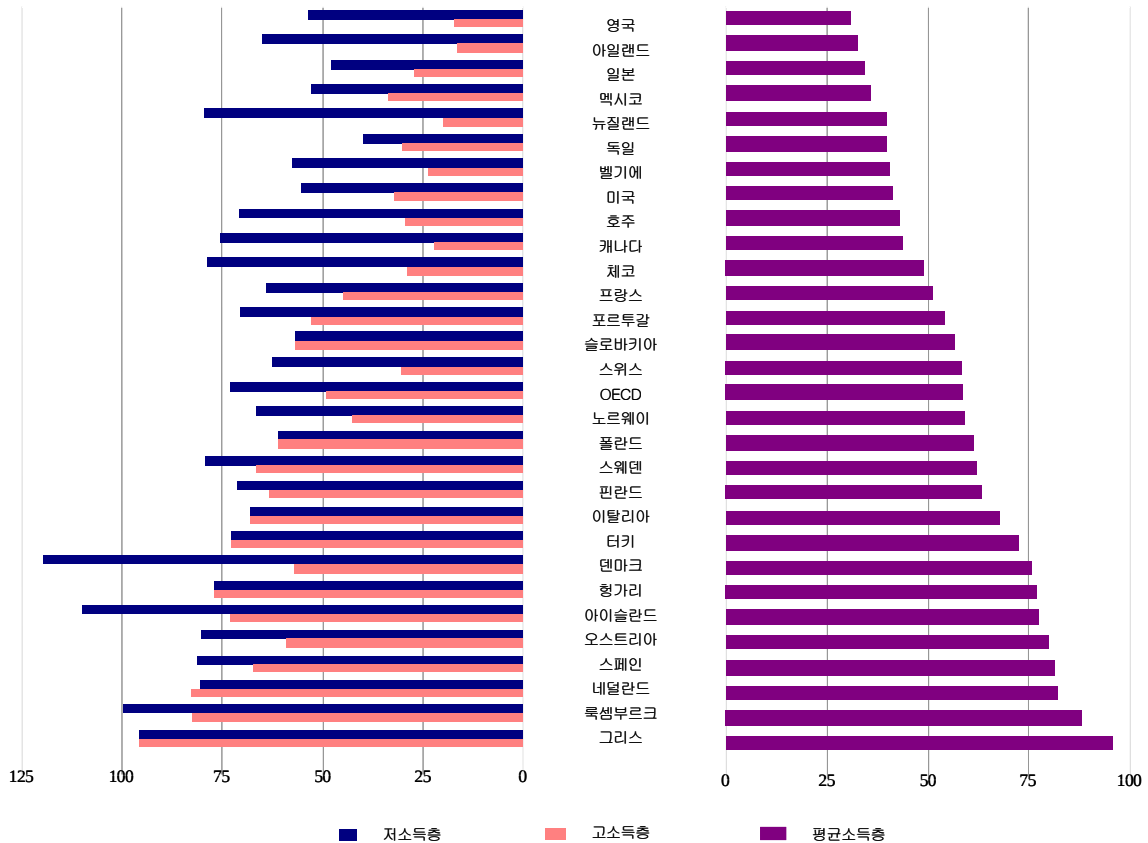
- 특히 영국은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낮추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30.8%**를 기록함.

영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국가 평균 소득대체율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고소득층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의 1/3수준 이하임

-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저소득층 53.4%, 일반소득층 30.8%, 고소득층 17.0%

이에 반해 그리스의 경우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일반소득층 모두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95.7%의 총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I-3> OECD 30개국의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주 : 稅前의 은퇴전 총소득에 대한 대체율을 의미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ies, 2007

□ OECD 국가간의 경제·문화적 차이 여부에 의해 노후소득보장의 정책 또한 상이하지만 보편적으로 영국 등처럼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선이 추진됨.

IV. 근로자의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

1. 근로자의 적정 소득대체율

□ 연령계층별 적정 소득대체율

통계청의 2007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하는 경우 적정소득대체율은 65.0% ~ 75.6%로 추정됨.

- 도시근로자가구중 홀벌이 가구중에서 20 ~ 59세의 4인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표 IV-1> 연령계층별 적정 소득대체율

(단위: 원)

가구주연령	총소득 (가구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생애평균소득대비 가계/소비지출비율
29세 이하	1,931,082	2,213,806	1,933,343	75.6%(=a/c) (노인가구 가계지출기준)
30 ~ 39세	2,712,175	2,782,808	2,305,474	
40 ~ 49세	2,904,687	3,147,657	2,586,238	
50 ~ 59세	2,497,195	3,057,623	2,375,516	65.0%(=b/c) (노인가구 소비지출기준)
60세 이상	1,181,801	1,899,262(a)	1,632,281(b)	
20 ~ 59세 평균	2,511,285(c)	2,800,474	2,166,570	

주 : 20세 ~ 59세 도시근로자가구주의 소득 대비 60세 이상 가계지출 또는 소비지출비율을 소득대체율로 정의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등의 데이터에 의해 분석

- 60세이상 노인부부가구중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중 평균소득계층의 소비수준을, 소득에 의하여 소비제약을 받지 않는 노인의 적정소비수준의 상한점으로 설정함
- 평균소득이하계층도 포함하는 소비수준을 노인의 적정소비수준의 하한점으로 설정

산정결과, 생애평균소득 대비 가계지출에 의해 산정한 소득대체율은 75.6%, 생애평균소득 대비 소비지출(비소비지출제외)에 의해 산정한 소득대체율은 65.0%로 추정됨.

□ 소득계층별 적정소득대체율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감소와 비소비지출 중 공적연금보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퇴직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추정

- 2007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가구주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한 후 노인의 표본가구를 2인가구로 가정, 소득대체율을 산정함.

<표 IV-2> 소득계층별 적정소득대체율

(단위: 명, 세, 원)

가계수지항목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전체
가구원수	2.83	3.26	3.46	3.6	3.63	3.36
가구주연령	47.17	43.22	42.66	43.1	44.49	44.13
가구주 근로소득(a)	966,828	1,686,669	2,299,536	3,128,859	4,669,685	2,550,509
가계지출	1,372,606	2,036,959	2,641,460	3,297,527	4,879,880	2,845,871
소비지출 ⁴⁾ (b)	1,248,658	1,770,879	2,228,165	2,717,155	3,691,110	2,331,318
비소비지출	123,948	266,079	413,295	580,372	1,188,771	514,553
- 공적연금보험료	22,101	55,982	91,590	132,281	191,643	98,728
OECD 균등화지수 ¹⁾ (c)	1.75	1.88	2.43	2.5	2.51	2.38
노인가구소비지출 조정지수(d=c/1.7) ²⁾	0.97	0.90	0.70	0.68	0.68	0.71
조정소비지출(e=b×d)	1,211,982	1,601,327	1,558,799	1,847,665	2,499,955	1,665,227
조정비소비지출(f) ³⁾	101,847	210,097	321,705	448,091	997,128	415,825
소득대체율(e+f)/a	135.8%	107.4%	81.8%	73.4%	74.9%	81.6%

주 : 1) OECD 3인 가족 및 4인가족의 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s) 1.7, 2.2를 선행보간법에 의해 재구성

2) 1.7은 OECD에서 제시한 성인 한명을 1로 할 경우 노인부부가구의 동등화지수임

3) 조정 비소비지출은 비소비지출항목에서 공적연금보험료를 제외한 수치

4) 소비지출항목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등으로 구성하여 분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등의 데이터에 의해 분석

산정결과, 저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은 135.8%의 소득대체율을, 고소득계층인 5분위계층은 74.9%의 소득대체율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전체적으로는 81.6%의 소득대체율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2 근로자의 실질 소득대체율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 근로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은퇴전 소득 대비 은퇴후 소득(연금소득)으로 가정하여 산출함.

은퇴전 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은퇴후 소득은 근로자의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 은퇴전 소득 :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소득(노동부통계)에 기초하여 은퇴시점 근로소득평균으로 환산하여 산정
- 은퇴후 소득 : 은퇴이후 은퇴기간동안 매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

<표 IV-3> 분석을 위한 제가정

구분	세부내용	산출근거
평균 취업연령 (a)	26.3세	노동부통계(2006)
평균 퇴직연령 (b)	54.0세	통계청통계(2006)
평균 기대수명 (c)	78.0세	노동부통계(2006)
생애 근로기간 (W=b-a)	28.0년	
은 퇴 기 간 (R=c-b)	24.0년	
근로기간 대 은퇴기간(W:R)	1.2 : 1	

□ 근로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자 평균취업연령은 26.3세, 평균퇴직연령은 54.0세, 평균기대수명은 78.0세(남녀평균)로 가정함.

평균취업연령 및 퇴직연령, 평균기대수명 등을 감안시 생애근로기간 ($w=b-a$)은 28.0년, 은퇴기간($r: c-b$)은 24.0년으로 산정됨.

- 근로자 평균취업연령과 평균기대여명은 2006년도 노동부 통계지표를, 평균퇴직연령은 2006년도 통계청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는 대체로 28.0년 동안 취업하여 은퇴기간 24.0년간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노동구조형태($w:r=1.2:1$)를 보이고 있음
근로자는 1.2년간 근로하여 1년간 노후생활을 보내야 하는 상황임.

2) 실질 소득대체율의 추정 결과

(1) 은퇴전 평균소득

-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소득평균과 평균임금상승률 4.70%를 기초로 근로기간 28년의 은퇴전 근로소득액을 산정하면 약 695만원으로 추정됨.

평균임금상승률을 기초로 낙관, 비관 시나리오(4.70%±1%)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기간 28년의 은퇴전 근로소득액은 각각 536만원, 89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도 기준 임금상승률을 28년간 부리하여 은퇴시점의 근로소득액으로 환산

- 근로기간 20년인 경우 최소 400만원 ~ 최대 576만원의 은퇴전 근로소득액이, 근로기간 35년인 경우 최소 691만원 ~ 최대 1,324만원의 은퇴전 근로소득액이 실현되어 근로기간에 따른 편차는 크게 나타남.

<표 IV-4> 근로기간별 은퇴전 근로소득액 추정

(단위 : 원)

시나리오	근로기간별 은퇴전 근로소득액				
	20년	25년	28년	30년	35년
시나리오 I (비관) - 임금상승률: 3.70%	4,008,597	4,807,134	5,360,712	5,764,744	6,913,115
시나리오 II (현재) - 임금상승률: 4.70%	4,810,420	6,052,244	6,946,347	7,614,648	9,580,391
시나리오 III (낙관) - 임금상승률: 5.70%	5,762,631	7,603,188	8,978,850	10,031,611	13,235,661

(2) 연금형태별 소득대체율

< 퇴직연금 >

현재 법정퇴직금의 적립률이 8.3%이므로 퇴직금이 퇴직연금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음.

-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은 적립금 규모와 운영수익률을 감안하고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즉 가입자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적립금이 형성되고 적립금의 운영수익률에 따라 최종급여가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

근로자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4.70%, 퇴직연금 평균운용수익률은 3.79%로 가정하고 은퇴시 연금자산규모를 산정

- 평균임금상승률 및 평균 운용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낙관 및 비관 시나리오 설정(평균임금상승률 3%, 평균 운용수익률 3%)
- 평균 임금 상승률 : 2007년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 상승률 적용(노동부 통계)

- 평균 운용 수익률 : 2006 ~ 2007년 생손보 DC형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적용

<표 IV-5> 퇴직연금 전환시의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시나리오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55세 수급개시, 은퇴기간까지 수급)				
	20년	25년	28년	30년	35년
시나리오 I (비관) - 임금상승률: 3.70% - 운용수익률: 2.79%	10.4% (416,858)	10.8% (520,526)	11.1% (594,329)	11.3% (649,079)	11.7% (808,277)
시나리오 II (현재) - 임금상승률: 4.70% - 운용수익률: 3.79%	11.5% (553,833)	12.2% (739,204)	12.6% (877,913)	12.9% (984,055)	13.6% (1,306,669)
시나리오 III (낙관) - 임금상승률: 5.70% - 운용수익률: 4.79%	12.7% (731,630)	13.7% (1,041,434)	14.3% (1,284,625)	14.7% (1,476,345)	15.7% (2,084,548)

주: 1) ()은 은퇴후 월 퇴직연금액을 의미

2) 가입기간 만기후 퇴직전 개인연금자산총액(기여금수익총액)을 은퇴기간(24년간) 일정수준의 연금으로 환산한 공식은 $\frac{\text{개인연금자산총액}}{r} [1 - (1+r)^{-n}]$ 이 사용됨(r: 운용수익률, n:기대여명)

또한 시나리오별 운용수익률을 확정이율로 가정, 연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은퇴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추정함.

< 개인연금 >

근로자는 개인연금에 평균적으로 매월 26만원을 가입하는 것으로, 개인연금의 운용수익률 평균은 5.06%(2007년 기준)수준인 것으로 가정함.

- 근로자는 생애근로기간동안 개인연금을 동일한 금액(즉 매월 26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균 개인연금 운용수익률 기준으로 시나리오 설정(5.06% ± 1%)

- 개인연금 가입금액 : 개인연금가입근로자(22만명) 평균가입금액
(2007년 교보생명 개인연금가입실태조사)

- 개인연금운용수익률 :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운용수익률평균

(생보협회 개인연금수익률 비교공시 데이터)

은퇴시 연금자산이 은퇴기간동안 시나리오별 운용수익률(4.7%±1%)로 분리된다는 가정(확정이율적용)하에 연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득대체율 추정

<표 IV-6> 개인연금의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추정

시나리오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55세 수급개시, 은퇴기간까지 수급)				
	20년	25년	28년	30년	35년
시나리오 I (비관) - 운용수익률: 4.06%	15.0% (599,699)	15.2% (731,733)	15.4% (824,526)	15.5% (892,836)	15.8% (1,089,409)
시나리오 II (현재) - 운용수익률: 5.06%	15.2% (733,092)	15.5% (938,309)	15.7% (1,088,073)	15.8% (1,200,971)	16.0% (1,537,162)
시나리오 III (낙관) - 운용수익률: 6.06%	15.5% (894,453)	15.8% (1,200,371)	15.9% (1,432,090)	16.1% (1,610,919)	16.3% (2,161,881)

주 : 1) ()은 은퇴후 월 개인연금액을 의미

2) 가입기간 만기후 퇴직전 개인연금자산총액(기여금수익총액)을 은퇴기간(24년간) 일정 수준의 연금으로 환산한 공식은 $\frac{\text{개인연금자산총액}}{\frac{1-(1+r)^{-n}}{r}}$ 이 사용됨(r: 운용수익률, n:기대여명)

3. 노후소득보장차원의 결과 평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소득대체율은 최소 65.0% ~ 최대 75.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여 실현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50.4%수준임.

- World Bank는 개인연금을 제외한 소득대체율로 60%수준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개인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5.4%임.

<표 IV-7>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효과

	적정(명목)소득대체율		실질(현실)소득대체율 ¹⁾ (연금가입 28년기준)
	World Bank ⁵⁾	우리나라	
개인연금(3층)	20%	65.0 ~ 75.6% ⁴⁾ (연령계층별기준)	15.7% ⁶⁾
퇴직연금(2층)	60%		12.6%
국민연금(1층)			22.8% ^{2) 3)}

- 주 : 1) 실질소득대체율은 개인, 퇴직, 국민연금을 직전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값임(즉 국민연금에서 산정하는 소득대체율 개념과는 차이가 존재함)
- 2)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 산식에 의해 [(연금수급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값(A부문), 개인의 생애평균소득(B부문)] 산정된 연금급여액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함.
- 3) A부문은 1,618,914원, B부문은 근로소득(2,010,000원)을 국민연금의 표준소득월액 평균값으로 환산(근로소득의 약 90%)하고, 이에 의해 산정된 연금급여액에 소비자물가지수(4%)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추정
- 4) 65.0%는 노인가구 소비지출기준이며, 75.6%는 노인가구 가계지출기준임
- 5) World Bank 등은 세계각국의 소득대체율(공적연금+퇴직연금)이 60% 수준인 것으로 분석, 이에 준하는 소득대체율을 권장
- 6) 특정회사의 개인연금 가입자 평균액을 기준으로 실질소득대체율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 존재

근로자의 사적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실적으로 28.3%수준에 지나지 않고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6%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20%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해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퇴직연금이 소득대체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표 IV-8>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평가

시나리오	실질 소득대체율(퇴직연금+개인연금)				
	20년	25년	28년	30년	35년
시나리오 I (비관)	25.4%	26.0%	26.5%	26.8%	27.5%
시나리오 II(현재)	26.7%	27.7%	28.3%	28.7%	29.6%
시나리오 III(낙관)	28.2%	29.5%	30.2%	30.8%	32.0%

또한 문제는 이와 같은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근로기간 28년 동안 퇴직금중간정산이 없고 지속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 산정 되었다는 데 있음.

-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구현되도록 퇴직연금 전환의무화 및 중간정산제 폐지, 근로기간 연장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성도 존재함.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적정 소득대체율에 비해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적연금 특히, 퇴직연금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요구됨.

V.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1. 정책적 시사점

- 인구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저출산 심화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OECD주요국은 퇴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즉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 시장기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이처럼 퇴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는 **퇴직연금기능이 공적연금 대체기능으로 전환되고, 퇴직연금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향**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공적연금의 대체기능은 공적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제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특히 호주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역할강화와 활성화차원에서 퇴직연금의 강제가입을 시행하고 있음.

- 선진국의 연금개혁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대응차원에서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낮추고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축이 요구됨.

□ 소득대체율 분석결과, 근로자 연금소득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50.4%수준으로 근로자적정소득대체율(최소65.0% ~ 최대75.6%)에 못미쳐 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재검토가 요구됨.

특히 퇴직금중간정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사적연금 실제소득대체율도 30% 수준에 미치지 않는 28.3%인 것으로 나타나 사적연금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12.6%, 개인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15.7%인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OECD 및 ILO 기준에 비해 훨씬 미달하는 수준임.
- 문제는 현행과 같은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사적연금을 통해 28%대의 소득대체율을 실현하는데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데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이상이 되도록 연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즉 적정한 노후소득보장과 사적연금의 기능제고차원에서 장단기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함.

2. 향후 과제

□ 단기적으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전환대책마련, 개인연금제 보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퇴직연금 전환대책 : 연금세제 혜택증대, 근로자 수급권보호장치 정비, 연금가입 강제화 검토, 중간정산제 폐지 등

개인연금제도 보완 : 개인연금자산 운용방법 다양화, 개인연금 이전제도의 보완, 개인연금세제의 정비 등

□ 장기적으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노동고용정책의 변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중요시 됨.

공사연금간 역할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연금제도를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설정하고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사적연금과 어떻게 상호연계할 것인가(공적연금 민영화 등)하는 연금제도 로드맵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등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과 관련된 노동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보다 제고되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됨.

< 참고문헌 >

- 교보생명, 개인연금가입실태조사, 2007.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2008.
- 노동부, 근로자 소득·소비 조사, 2007.
- 류건식·이상우, 「주요국의 퇴직연금 개혁특징과 시사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조사자료, 2007.4.
- 방하남,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 분담」, 한국개발연구원, 2005.12.
-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자료, 2006.
- 원종욱,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연금포럼, 국민연금연구원, 2000.6.
- 윤석명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1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5.
- _____, 도시가계조사, 2007.
- Laboul Andre, "Private Pension System ; Regulatory Policies", Aging Working Paper, No, 2.2, Paris, 1998.
- OECD, *Regulating Private Pension Schemes; Trends and Challeng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2.
- _____, *Pension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ies*, 2007.
- World Bank Report No 20204-KO, “Republic of Korea ;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May 10. 2000.
- World Bank, “Old-Age Income Support in theTwenty-fir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2005.5

<별첨> OECD국가의 공적연금 총 소득대체율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0.5배)	고소득층 (평균소득의 2배)	평균소득층
영국	53.4	17	30.8
아일랜드	65	16.2	32.5
일본	47.8	27.2	34.4
멕시코	52.8	33.6	35.8
뉴질랜드	79.5	19.9	39.7
독일	39.9	30	39.9
벨기에	57.3	23.5	40.4
미국	55.2	32.1	41.2
호주	70.7	29.2	43.1
캐나다	75.4	22.2	43.9
체코	78.8	28.9	49.1
프랑스	63.8	44.7	51.2
포르투갈	70.4	52.7	54.1
슬로바키아	56.7	56.7	56.7
스위스	62.5	30.5	58.4
OECD	73.0	49.2	58.7
노르웨이	66.4	42.7	59.3
폴란드	61.2	61.2	61.2
스웨덴	79.1	66.3	62.1
핀란드	71.3	63.4	63.4
이탈리아	67.9	67.9	67.9
터키	72.5	72.5	72.5
덴마크	119.6	57.1	75.8
헝가리	76.9	76.9	76.9
아이슬랜드	109.9	72.9	77.5
오스트리아	80.1	58.8	80.1
스페인	81.2	67.1	81.2
네덜란드	80.6	82.6	81.9
룩셈부르크	99.8	82.5	88.3
그리스	95.7	95.7	95.7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7

Insurance Business Report (통권 제26호)

발 행 일 2008년 2월

발 행 인 나 동 민

편 집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 6 8 - 4 4 0 0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368-443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